

1. 개정이유

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,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,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(안 제2조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호”를 “제2조제11호”로 한다.

① 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.

1.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
2.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
3.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존에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기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) <u><신 설></u>	제2조(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) ① 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. 1.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.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.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----- ---- 제2조제11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	

한다.

1. ~ 3. (생략)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